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점, 재무제표 영향, 세무조정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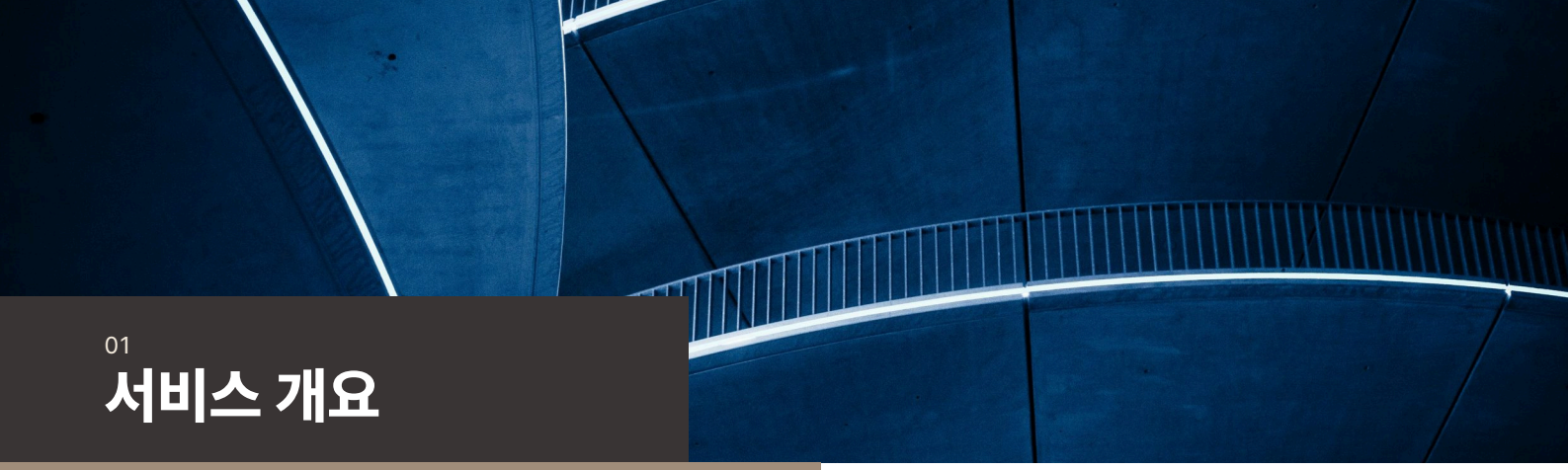
회계법인 리파인드

# K-IFRS 전환 제안서

작성일 2026. 11. 2.

REFINED
회계법인 리파인드

T. 02-516-3830 | E. admin@refinedacc.com | W. refinedacc.com



01

# 서비스 개요

적용 의무 시점, 재무제표 영향, 세무 처리를 조문으로 점검합니다

**검토 결론**

상장 목표가 Y 사업연도면 Y-1 사업연도부터 K-IFRS가 의무입니다(외감법 시행령 §6①2호).

상환권이 보유자에게 있는 우선주는 금융부채가 될 수 있고, 자본에서 부채로 옮긴 금액만큼 자본총계가 줄어듭니다(제1032호 AG25).

## 전환 전 판정 항목 4개

**1**
**적용 대상**
상장 예정 여부와 지배·종속 관계

**2**
**자본 분류**
상환권이 있는 우선주의 계약 조건

**3**
**리스 계약**
임차 기간과 소액·단기 면제 해당 여부

**4**
**세무조정**
감가상각 추가 손금과 리스료 귀속시기

## 이런 분께

- ✔ 상장을 준비 중이고 K-IFRS 재무제표가 필요한 대표님
- ✔ 상환우선주 등 투자 계약이 있어 자본 분류가 걱정되는 분
- ✔ 지배회사가 K-IFRS 연결재무제표를 쓰는 지배·종속 관계의 회사
- ✔ 비상장이지만 K-IFRS 임의 도입을 검토 중인 분

## 서비스 범위와 진행 단계

| | |
|---|---|
| **1 현황 진단** | 상장 목표 연도로 적용 시작 사업연도를 정합니다. 상환권이 있는 우선주, 리스 계약, 영업권, 감가상각 자산의 목록을 받아 K-IFRS 적용 대상 항목을 추립니다. |
| **2 영향 산정** | 항목별로 자본총계, 부채비율, 영업이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합니다. 상환권 우선주와 리스부채가 부채로 계상되는 금액을 여기서 구합니다. |
| **3 세무 검토** | 바뀐 장부 숫자 가운데 세법이 달리 정한 항목을 가려냅니다. 감가상각비 추가 손금산입(법인세법 §23②)과 리스료 귀속시기(법인세법 시행규칙 §35①)가 중심입니다. |
| **4 감사인 대응** | 회사 담당자와 함께 회계정책 문서와 전기 비교정보 재계산 방법을 정하고, 확정한 재무제표는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합니다. |



02

# 기준 차이와 세금 영향

회계기준 판정 순서와 장부 숫자가 세금으로 이어지는 경로

외감법 §5③ 전단은 회사가 §5①의 두 회계처리기준 중 하나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K-IFRS를 의무로 적용할 회사의 범위는 같은 항 후단이 시행령에 맡겼고, 외감법 시행령(이하 외감령) §6①이 상장법인, 상장 예정 회사, 금융회사 등을 열거합니다. 장부 숫자가 바뀌면 세법상 소득 계산(법인세법 §43)과 상법상 배당 한도(상법 §462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도해 1. K-IFRS 전환의 판정과 파급 경로

**적용 판정**
외감령 §6① 대상 여부

→

**재무제표 작성**
대표이사·회계담당 임원 책임

→

**외부감사**
외감법 §4①2호 상장 예정 회사

→

**세무조정**
법인세법 §43·§23②

→

**배당 한도**
상법 §462① 순자산액

**과세소득 = 장부 손익 ± 세법이 달리 정한 조정(§43 요건 충족 시)**

법인세법 §43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 온 법인이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준에 따르도록 합니다. 전환으로 바뀐 장부 숫자가 세금에 그대로 반영되는지는 이 요건과 세법이 따로 정한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지급금이 이자비용인지를 다툰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K-IFRS 분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표 항목이 감가상각비(법인세법 §23②)와 리스료 귀속시기(법인세법 시행규칙 §35①)입니다. 상법 §462①의 한도는 순자산액에서 출발하므로 장부상 순자산이 줄면 한도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근거: 외감법 §5③·§6①, 외감령 §6①, 법인세법 §43·§23②, 법인세법 시행규칙 §35①, 상법 §462①, 서울고등법원-2020-누-57822

## 도해 2.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비교

두 기준의 처리와 그것이 세법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3개 항목으로 비교합니다

| 항목 | 일반기업회계기준 | K-IFRS |
|---|---|---|
| **임차 사무실(운용리스)** |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균등 배분해 비용으로 인식합니다(제13장 13.19) |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제1116호 §22). 단기·소액 리스는 면제를 선택합니다(§5) |
| **영업권** |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내용연수는 20년을 넘지 못합니다(제12장 12.32) |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를 매년 손상검사합니다(제1036호 §96). K-IFRS 최초 적용 전 취득분은 법인세법 §23② 대상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24②2호) |
| **유형자산 감가상각(회계 처리와 세무조정)** | 결산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23①) | 종전감가상각비 또는 기준감가상각비가 §23①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크면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 우선주 분류와 비교정보는 확인 항목 02·06에서 다룹니다. 조문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현행입니다.



03

# 실행 전에 확인하는 항목 6개

6개 항목은 시작 연도, 자본총계와 부채비율, 세무조정, 감사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 01 적용 시점과 대상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K-IFRS가 의무입니다(외감령 §6①2호). 목표가 Y 사업연도면 Y-1이 첫 적용 사업연도입니다. 코넥스 상장 예정 회사는 제외됩니다.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K-IFRS를 쓰면 연결이 아닌 재무제표에도 K-IFRS를 적용합니다(§6②). 지배·종속 관계의 정의는 외감령 §3①에 있습니다.

근거: 외감령 §3①·§6①1·2호·②, 외감법 §5③

## 02 상환권 있는 우선주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금융부채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자본으로 처리 중이면 부채로 계상하는 금액만큼 자본총계가 줄고, 누적 결손금이 있으면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환 능력이 부족해도 계약상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상 처리는 사건별로 따로 봅니다. 상환 지급금이 이자비용인지를 다툰 2017 사업연도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K-IFRS 분류를 구 법인세법 §43의 공정·타당한 회계 관행으로 보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2심 판결).

근거: 제1032호 AG25, 서울고등법원-2020-누-57822(2021.7.14.)

## 03 리스 계약 목록

임차 사무실도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합니다(제1116호 §22). 부채가 그만큼 늘어 부채비율이 달라집니다. 리스기간 12개월 이하의 단기리스는 기초자산 유형별로, 소액 기초자산 리스는 리스별로 면제를 선택합니다(§5·§8). 소액인지는 회사 규모와 무관한 절대 기준으로 보며, 자동차 리스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예시합니다(B4·B6). 계약서를 모으지 않으면 부채 규모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제1116호 §5·§8·§22·B4·B6·B8, 부록 A

## 04 세무조정 항목

K-IFRS 적용 법인은 개별 자산별로 종전감가상각비(2013.12.31 이전 취득분, 종전 방식이면 §23①로 손금산입했을 금액) 또는 기준감가상각비(2014.1.1 이후 취득분, 기준내용연수 적용액)가 §23①로 넣은 금액보다 크면 차액을 추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도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 전 취득분(합병·분할 계상분 제외)은 대상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24②2호).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의 리스료는 리스기간 정액 손금이라 장부의 사용권자산 상각비·이자비용과 달라져 매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23②, 법인세법 시행령 §24②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35①, 서면-2019-법인-2477

## 05 부채비율과 배당 한도

상환권 우선주가 부채로 바뀌고 리스부채가 늘면 자본총계는 줄고 부채비율은 오릅니다. 차입 약정에 부채비율 같은 재무비율 조건이 있으면 전환 전에 약정서의 산식과 측정 기준일을 점검합니다. 상법 §462①의 배당 한도는 순자산액에서 출발하므로 장부상 순자산이 줄면 한도도 줄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순자산으로 한도를 다시 계산하고, 이연법인세 영향도 영향 산정 항목에 넣습니다.

근거: 상법 §462①, 제1032호 AG25, 제1116호 §22

## 06 비교정보와 감사인 책임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모든 금액에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합니다(제1001호 §38). 그래서 전기 금액도 같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최초 채택의 전환일과 개시 재무상태표는 제1101호가 정하며, 전환 범위는 착수 단계에서 항목별로 확정합니다.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습니다(외감법 §6①).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작성 관련 회계처리 자문에 응하는 행위는 금지되고(§6⑧), 회사도 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해 대신 작성했거나 회사가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3개 사업연도 범위에서 지정 감사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1①5호). 자문은 감사인이 아닌 별도 주체가 맡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제안은 저희가 감사인이 아닌 회사에 한합니다.

근거: 제1001호 §10·§38, 외감법 §6①·⑧·§11①5호



04

# 판정 순서와 일정

대상 판정은 외감령 §6 순서로, 일정은 감사인 선임 기한에 맞춥니다

## 도해 3. 상장 예정 연도(Y) 기준 일정

**Y-2 개시 전**
Y-2 금액이 Y-1 재무제표 비교정보가 되므로(제1001호 §38), Y-2 사업연도 중 우선주·리스 목록과 자본총계 영향 산정을 마칩니다(권고 일정).

**Y-1 개시일 전후**
선임 기한은 개시일부터 45일(감사위원회 설치 회사는 개시일 전, 직전 무감사 회사는 4개월). 넘기면 지정 요구 대상입니다(외감법 §10①·②, §11①2호).

**Y-1 사업연도**
이 사업연도 재무제표부터 K-IFRS가 의무입니다(외감령 §6①2호). 재무제표는 회사가 작성해 감사인에게 제출합니다(외감법 §6②).

**Y 사업연도**
상장 예정 연도에도 K-IFRS를 적용합니다. 상장해 주권상장법인이 되면 연속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하게 선임합니다(외감법 §10③).

## 도해 4. 판정 순서

| 질문 | 답에 따른 판단 |
|---|---|
| **1. 주권상장법인입니까?** | 예: K-IFRS 의무입니다.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됩니다(외감령 §6①1호)<br>아니오: 질문 2로 갑니다 |
| **2. 해당·다음 사업연도 중 상장하려 합니까?** | 예: 의무입니다.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됩니다(§6①2호)<br>아니오: 질문 3으로 갑니다 |
| **3. 금융지주회사, 은행,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신탁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신용카드업자입니까?** | 예: 의무입니다(§6①3~7호). 금융지주회사법 §22의 전환대상자는 제외됩니다<br>아니오: 질문 4로 갑니다 |
| **4.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K-IFRS를 씁니까?** | 예: 연결이 아닌 재무제표에도 K-IFRS를 적용합니다(§6②). 지배·종속 관계는 외감령 §3①이 정합니다<br>아니오: 질문 5로 갑니다 |
| **5. 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까?** | 의무가 없습니다. 외감법 §5③ 전단에 따라 §5①의 두 기준 중 하나로 작성합니다. 임의 도입의 이익과 비용을 따져 정합니다 |
| **6. (K-IFRS 판정과 별개) 상장 예정이 아닌 주식회사가 규모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입니까?**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500억 원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 100억, 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이어도 대상입니다(외감령 §5①, 종업원 수는 3호라목 기준). 상장 예정 회사는 규모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외감법 §4①2호). 유한회사는 외감령 §5②가 따로 정합니다. |

## 보수

**보수는 상담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현재 재무제표, 상환권이 있는 우선주와 리스 계약서 목록, 상장 목표 연도 3가지가 있으면 범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05

# 자주 묻는 질문과 담당자

문의는 대표번호로 받습니다

**Q1. 비상장 회사도 K-IFRS를 미리 도입할 수 있나요?**

외감령 §6①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에는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외감법 §5③ 전단은 §5①의 두 기준 중 하나로 작성하도록 하고, 외감령 §6①은 K-IFRS를 의무로 적용할 회사를 열거합니다. 세법도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라는 문언으로 법인세법 §23②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35①을 정하므로 임의 도입 법인에도 같은 문언이 적용됩니다. 다만 리스부채와 우선주 분류로 부채비율이 바뀌므로 차입 약정의 재무비율 조건을 먼저 점검합니다.

근거: 외감법 §5③, 외감령 §6①, 법인세법 §23②, 법인세법 시행규칙 §35①

**Q2. 월세로 쓰는 사무실도 리스부채로 인식하나요?**

원칙은 인식입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제1116호 §22).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운용리스의 최소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균등 배분해 비용으로 인식하므로(제13장 13.19)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지 않던 항목입니다. 리스기간 12개월 이하(매수선택권이 있으면 제외)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는 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의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제1116호 §5·§8·§22·B4·B6, 부록 A, 일반기업회계기준 13.19, 법인세법 시행규칙 §35①

**Q3. 상환전환우선주는 자본과 부채 중 어디에 적나요?**

상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출발점입니다. 특정 시점에 상환하거나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금융부채의 특성이 있습니다. 현금 상환 권리가 발행자에게만 있으면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AG25). 자금 부족이나 법령 제한으로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도 계약상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AG25). 전환권이 붙은 계약의 최종 분류는 계약 조건 전체를 읽고 계약별로 판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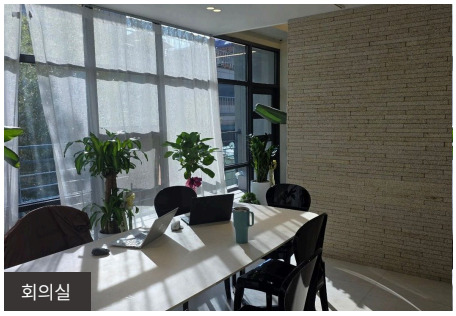
근거: 제1032호 AG25

## 담당 회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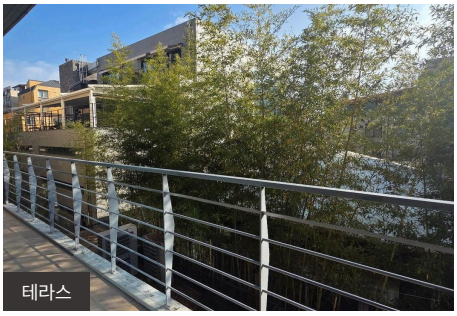
| 이름 | 직위 | 전문 분야 |
|---|---|---|
| **이종헌** | 대표 회계사 | 가업승계·상속증여, 법인 구조 설계, 세무조사 대응, 기업가치평가 |
| **임연희** | 부대표 회계사 | 법인 조세 업무, 중소·중견기업 세무 자문 |
| **이현우** | 파트너 회계사 | 세무조정, 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 세무진단 |
| **장하리** | 이사 회계사 | 세무조정, 세무자문, 개인 재산제세 업무 |
| **김윤경** | 이사 회계사 | K-IFRS·US-GAAP 감사, 투자회계, 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 검토 |
| **박광종** | 세무사 고문(세무법인 엑스퍼트 소속) | 국세청 약 40년 근무, 조사·징세·부가가치세 업무 |



대기 라운지



회의실



테라스

**T. 02-516-3830 | F. 0507-1790-1496 | E. admin@refinedacc.com | W. www.Refinedacc.com**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40길 18(크레아빌딩) · 지하철 신사역·논현역에서 각각 도보 5분

상담 내용은 공인회계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세율·기한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